

알 권리와 언론보도의 한계

이택수

변호사 · 중재의원

민주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행해지는 만큼, 자유롭고 최대한의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하는 여론이 없이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올바르게 풍부한 정보 없이는 일반 국민의 책임있는 여론이 형성될 수가 없다.

이러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첫째, 정보를 발표하여 전파하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일반대중이 스스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알권리」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매체 등 정보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정보수령권), 일반대중이 정보를 구함에 있어서 공권력에 의하여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적극적으로 관공서등에 정보의 제시를 요구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각국마다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력한 매스 미디어가 집중화 되어 언론기관과 수용자인 일반국민이 현저하게 분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 따라 일반국민은 매스 미디어가 보도하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반론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접근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게 되었다.

둘째, 제 2 차 세계대전 후 국가기밀사항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즉 전후 많은 나라에서 국가기능이 증대되고 행정권이 강화됨에 따라 방대한 양의 정보가 생기게 되었으나 전후 국제사회간에 냉전이 심해지고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영역이 확대되어 국민의 궁금증이 날로 심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민들은 민주적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열기가 고조되고 그러기 위하여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위와 같은 2 가지의 요구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보개시청구권을 사법적으로 보장한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1967 년에 제정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이다. 이 법은 대통령이 정한 9 개의 국방 또는 외교정책에 관한 비밀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의사공개, 재판공개,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상품 및 역무에 관한 국가의 지식, 정보의 제공의무 등에 그치고 행정권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보장한 실정법상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실정법상 용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당사자적격을 고려할 때 알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국가에

적극적으로 정부정보의 개시를 청구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이기는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매스 미디어의 조직이 독점화, 집중화, 거대화되고 상업적인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면서부터, 매스 미디어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독자 내지 시청자 일부 계층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하여 언론매체의 사회적 책임론이 등장하고, 한편 수용자가 그릇된 정보를 바로잡으려는 운동이 일게 되었는데, 정보소비자란 시청료나 구독료를 지불하면서 정보라는 특수한 상품을 매스 미디어로부터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의 대부분은 정보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인 쟁점이 있을 때, 매스 미디어가 발표한 견해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매스 미디어에 접근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접근권(right to access)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에 대한 입법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언론매체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았을 경우, 법률적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매스 미디어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셋째,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그 공표 후 일정 기간 내에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방송국의 장 혹은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정보소비자의 권리 중 위 정정보도청구권은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이 아니라, 언론침해에 대한 정보소비자 개인이나 법인의 권익을 정정보도를 통하여 가장 정확하게 보호해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보도의 자유를 보도자 측의 보도하는 자유로만 파악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보도의 자유를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보도를 받는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취재의 자유와 취재내용에 대한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보도기관의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올바르게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보도를 함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압력단체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한편, 그 보도내용이 편파적이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무제한의 자유란 있을 수가 없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언론보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는 프라이버시권이다. 프라이버시권은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인 반면, 보도의 자유는 무엇이든 알고 싶어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자유인데, 우리나라 헌법 제 16 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과 보도의 자유가 상충할 때 어느쪽을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안의 다양성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을 세우기는 사실상 어렵고 개개의 경우마다 양쪽의 이익을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흥미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고, 또한 현대사회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개인의 사적 이익이 거대한 힘을 가진 언론사에 의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사료된다.

둘째는 명예훼손의 경우로, 언론기관이 어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나, 단지 독자의 흥미를 돋우기 위하여 아니면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사실의 확인절차를 거침이 없이 막연히 추측을 하여, 마치 그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일반인이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인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셋째는 국가기밀에 관계되는 것으로, 특정한 국가기밀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보도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그 결과에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해악을 끼치게 된다면, 보도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국가기밀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언론자유화시대를 맞이하여 일시에 많은 언론매체가 등장하였고, 언론사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포로주의, 선정주의로 치닫기 쉽게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 기자 및 언론사의 품위와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신문이나 방송을 막론하고 기자가 취재 및 보도활동을 함에 있어서 진실 보도를 위해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건 언론단체 또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기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기자 및 언론사는 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특정한 계층의 일방적인 대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기자는 오직 사회적 윤리적 사명을 가지고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한치도 자세를 흐트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론사와 기자가 위와 같은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한 언론에 관한 분쟁은 영원히 줄어들지 아니할 것이다. 언론사는 그릇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정정보도청구를 당한 그 자체를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정보도를 자주 하면 당해 언론사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도의 신속성을 기하자면 보도사실의 진실성이 완벽할 수가 없고, 완벽하지 아니하더라도 독자들에게는 알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에 그 보도사실이 진실과 다름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하여 이를 스스로 시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정보도를 자주 함으로써 오히려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에는 만약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을 경우 더 큰 피해가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여 아예 정정보도청구따위는 생각조차하지 아니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와는 반대로 그것을 꼬투리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어느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그릇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법적으로 정정보도청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상 그 절차에 따라,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고 중재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그 이상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중앙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 현재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